

제288회 임시회
2010. 3. 23(화)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행정소방위원회

충청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0.
행정소방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3월 2일
충청북도지사
2. 회 부 일 자 : 2010년 3월 3일
3.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소방위원회(2010. 3. 15.)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토론, 심사의결(원안의결)

II.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정책관리실장 우병수)

1. 제안이유

- 국가기관에서 징수하는 지방소비세를 시도 재정보전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29조 개정, 시행(10.1.1)에 따른 관련조례 개정임

2. 주요내용

- 지방소비세액을 재정보전금 재원에 포함

III. 검토보고 요지

(행정소방수석전문위원 장용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 1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소비세액을 재정보전금 재원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북도의 자료에 따르면 지방소비세 신설에 따라 우리도에서는 2010년도 세수가 약 1,015억 증가할 것이고, 본 조례 개정으로 시군 일반재정보전금은 323억 5,728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에는 이견이 없음.

『참고자료 1』 일반재정보전금 교부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7	2008	2009	2010 (지방소비세분)
총 계	347,550	121,293	119,608	106,647	144,733 (32,357)
청주시	126,061	42,540	43,742	39,779	53,238 (11,902)
충주시	47,810	17,408	17,029	13,372	18,556 (4,149)
제천시	28,608	10,426	9,660	8,522	11,146 (2,492)
청원군	36,970	12,585	11,950	12,434	16,883 (3,774)
보은군	9,564	3,413	3,283	2,867	3,965 (886)
옥천군	12,790	4,576	4,336	3,878	5,227 (1,168)
영동군	11,727	4,081	3,994	3,652	4,825 (1,079)
증평군	9,468	3,368	3,237	2,863	3,798 (849)
진천군	17,893	5,868	6,246	5,779	7,571 (1,693)
괴산군	10,702	3,718	3,618	3,366	4,472 (1,000)
음성군	27,021	10,214	9,413	7,394	11,362 (2,540)
단양군	8,933	3,094	3,098	2,740	3,691 (825)

※ 1) 2010년도는 추정액이며, 2010 지방소비세분은 지방소비세 예상액 1,015억원에 대한 일반재정보전금 배분 예상액임.

2) 2009 : 2010년도 예산으로 교부할 도세 초과징수분 6,536,455천원 포함된 금액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V. 토론 요지 : “생 략 ”

VI. 심사 결과 : 원안의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IX.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충청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72
----------	-----

제출연월일 : 2010년 3월 2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국가기관에서 징수하는 지방소비세를 시도 재정보전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29조 개정, 시행(‘10.1.1)에 따른 관련조례 개정임

2. 주요내용

- 지방소비세액을 재정보전금 재원에 포함(안 제4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기간 ‘10. 2. 5 ~ 2. 24)

6. 부패영향평가 : 이견없음

7.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공동시설세를 제외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공동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총액
2. 도의 지방소비세액을 전년도 말의 도의 인구로 나눈 금액에 전년도 말의 해당 시·군의 인구를 곱한 금액

제6조제1항 중 “도 전체의 도세 징수실적”을 “도 전체의 도세징수실적(지방소비세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공포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재정보전금의 재원) ①재정보전금의 재원은 <u>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공동시설세를 제외한다)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u></p> <p><신 설></p> <p>②(생략)</p>	<p>제4조(재정보전금의 재원) ①재정보전금의 재원은 <u>다음 각 호의 금액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공동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총액</u> 2. <u>도의 지방소비세액을 전년도 말의 도의 인구로 나눈 금액에 전년도 말의 해당 시·군의 인구를 곱한 금액</u> <p>②(현행과 같음)</p>
<p>제6조(재정보전금의 산정·배분방법) ① 일반재정보전금의 산정방법은----- -----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은 <u>도 전체의 도세 징수 실적에서</u> 당해 시·군의 도세징수실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며, 10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정력지수(「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산정한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p> <p>② ~ ⑤ (생략)</p>	<p>제6조(재정보전금의 산정·배분방법) ① 일반재정보전금의 산정방법은-----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은 <u>도 전체의 도세 징수실적(지방소비세는 제외한다)에서</u> 당해 시·군의 도세징수실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며,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정력지수(「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산정한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관련법령 발취

□ 지방재정법

제29조(시·도의 시·군에 대한 재정보전 등) ① 시·도지사(특별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27퍼센트(인구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에 대한 재정보전금의 재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1.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세(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총액
2. 해당 시·도(특별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방소비세액을 전년도 말의 해당 시·도의 인구로 나눈 금액에 전년도 말의 시·군의 인구를 곱한 금액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정보전금의 재원을 인구, 징수실적(지방소비세는 제외한다), 해당 시·군의 재정사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의 시·군에 배분한다.

③ 시·도지사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배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